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34
------	------

2021. 4. 22.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4월 2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1년 4월 6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4.2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조인동)

1. 제안이유

- 자치경찰제의 시행,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소방공무원 시·도별 기준정원이 증원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위원회 사무기구 정원 증원(36명) 및 재배치(7명)

1) (증 원) 정무직 2, 행정4급 2, 행정5급 5, 행정6급 8, 전산6급 1, 행정7급 13, 행정8급 2, 총경 1, 경정 1, 경위 1

2) (재배치) 행정5급 2, 행정6급 3, 행정7급 2

나. 경찰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규정함 (안 별표 6)

다.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소방 분야별 법정 기준인력 보강을 위한 소방공무원 증원(193명) (안 별표 5)

- 소방정 1, 소방령 4, 소방경 12, 소방위 79, 소방장 44, 소방교 53

라.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생태독성 검사 등 행정수요 증가 분야의 효율적 인력 배치를 위한 증원(6명)

마. 아리수 수질향상·생산공정 효율화를 위한 아리수정수센터 정원 조정

- 시설관리8급 △8 → 공업연구사 +8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자치경찰제의 전면시행과 소방공무원 인력확충, 의정활동 지원 강화 등의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공무원 정원을 235명 증원하고자 제출되었음.

나.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 신설(증원 36명, 재배치 7명)

- 자치경찰제의 전면시행(2021.7)에 앞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에 따라 서울시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을 신설하게 됨.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개요

❖ 기 구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 성 격 : 서울특별시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
- 구 성 : 1위원회 1국 3과 11팀 ※ 경찰 4팀 포함
 - ▶ 위원회 : 위원장 1명·상임위원 1명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상임위원이 사무국장 겸임)
 - ▶ 사무국 : 1국 3과 11팀
 - 자치경찰총괄과(행정4, 4팀), 자치경찰협력과(총경, 4팀), 자치경찰지원과(행정4, 3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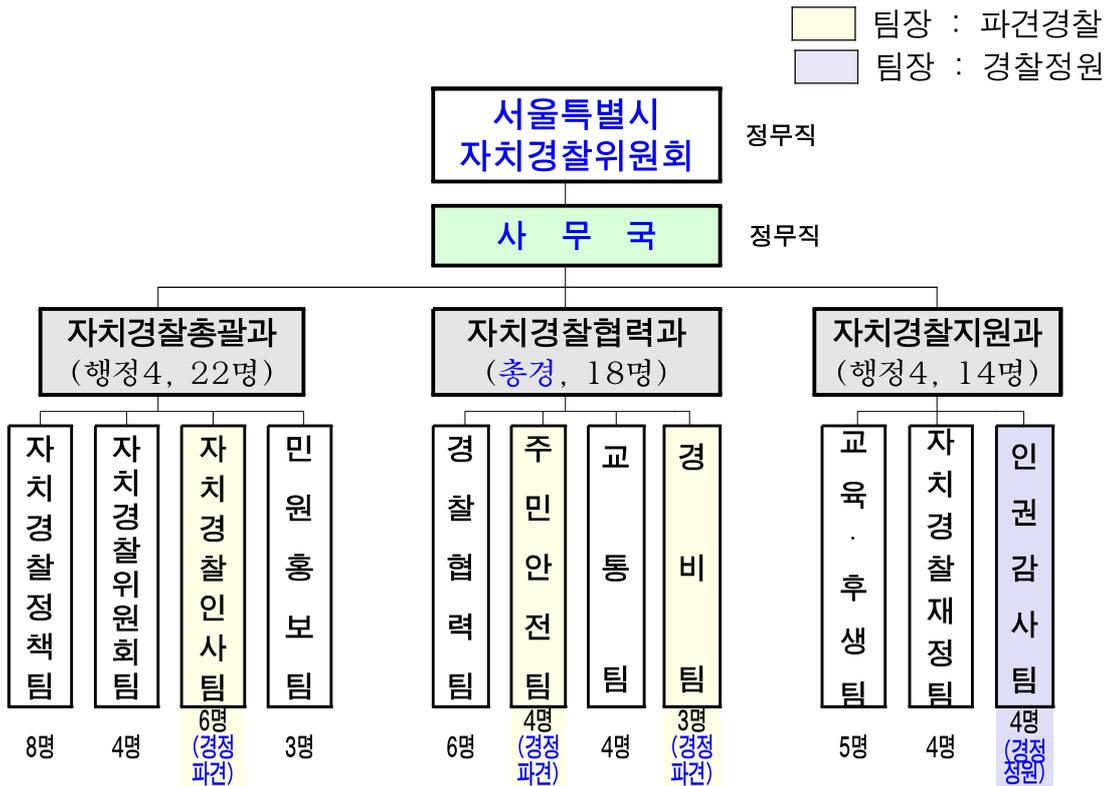
❖ 인 력 : 위원회 7명, 사무국 56명 ※ 경찰 16명 포함

- 위원회 : 7명 (정무직 2명 포함)
- 사무국 : 56명 (정무직 2명, 일반직 38명, 경찰 정원 3명, 파견 경찰 13명)
 - ▶(市 40) 정무직 2, 행정4급 2, 행정5급 7, 행정6급 11, 행정7급 15, 전산6급 1, 행정8급 2

※ 배정방법 : 순증 +33명, 이관 7명 (←조직담당관 2개팀)

- ▶(경찰 3) 총경 1, 경정 1, 경위 1
- ▶(파견 13) 경정 3, 경감 7, 경위 3

❖ 조직도



- “경찰법” 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합의제 행정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정무직 1급)과, 상임위원(사무국장 겸임, 정무직 2급) 1명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보좌하는 사무국은 서울시 공무원 31명 (행정4급 2명 포함)을 순증하고, 현행 조직담당관의 자치경찰 준비 관련 2개팀(7명)을 자치경찰위원회로 재배치하여 운영하게 됨.

- 또한, 치안행정과 경찰내부 인력·조직 등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경찰법 시행령¹⁾에 따른 경찰공무원 3명(총경1, 경정1, 경위1)과 경찰청 파견인력 13명이 사무국에서 합동근무를 할 계획임.
- 이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1국·3과·11팀, 56명(정무직 2명, 일반직 38명, 경찰 정원 3명, 파견 경찰 13명)으로 설치·운영될 계획임.
-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치경찰 제도가 최초로 전면 도입되는 만큼 자치경찰사무의 성질과 업무량, 전담조직의 인력 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다만, 서울시는 관할 면적에 비해 인구의 규모(전국대비 18.7%)와 경찰인력(23.4%)의 비중이 높고, 112 신고접수 21.8%를 차지하는 등²⁾ 치안 수요가 높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의 조직 규모와 정원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타 시·도 자치경찰 인원과 자치경찰위원회 현황 >

	자치경찰 인원	자치경찰위원회 규모
서울시	3,578명	3과 11팀, 56명
경기도 남부	2,385명	2과 5팀, 38명
경기도 북부	900명 내외	2과 5팀, 34명
부산시	1,615명	2과 6팀, 41명

※ 출처 : 서울시 내부 보고서 참고 및 유선 확인

1)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총정원은 48명(총경 16명, 경정 16명, 경위 16명)이고,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에 3명씩(총경 1명, 경정 1명, 경위 1명) 배정이 됨.

2) 2019년 경찰통계연보

- 또한, 향후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한 협력사업을 발굴·확대할 경우에는 자치경찰업무가 급증해 자치경찰위원회가 비대해질 수 있으므로 시민의 치안행정 수요를 고려해 조직과 정원 규모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사무국 전체 인력 규모(56명)에 비해 경찰 인력(16명)의 비중이 낮아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유기적 연계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경찰인력의 적정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다. 소방분야별 현장인력 확충과 금천소방서 신설(증원 193명)

- 소방분야의 인력 확충을 위해 본부의 현안 수요 4명,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보다 부족한 인력 확충 110명, 금천소방서 신설 79명 등 총 193명을 증원하고 있음.
- 본부의 현안 수요 4명은 ▶ 감염병 대응 구급행정 1명, ▶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1명, ▶ 119광역수사대 2명임.
 - 감염병 대응 구급행정 1명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방청에 감염병 대응부서가 신설되고 감염병 전담 구급대 운영계획, 감염방지 물품 확보 등 신규사무가 추가되어 행정인력을 충원하는 것임.
 -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1명은 2020년 4월 센터가 시범운영되면서 화재감정서 작성, 제조위험물 판정 등 업무량이 전년대비 226%가 증가함에 따라 상시 수행 인력을 확보하는 것임.

- 119광역수사대 2명은 특별사법경찰인 119광역수사대의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방해사범 수사, 소방공무원 법률지원 등 업무량이 전년대비 251%가 증가해 인력을 보강하는 것임.
- 소방분야별 법정 기준인력 보강을 위한 증원 110명은 ▶구급대 63명, ▶화재진압 12명, ▶화재조사 12명, ▶구조대 15명, ▶구급상황 관리 센터 6명, ▶소방항공대 2명임³⁾.
- 「소방기본법」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소방력)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고(제8조 제1항),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소방력기준”)에서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별표3)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소방서와 안전센터 등 대부분 소방기관의 정원은 “소방력기준”보다 부족한 상황으로⁴⁾, 개정안은 이중 업무 하중이 높은 소방기관을 중심으로 인력을 확충하게 되었음.
- 향후에는 “소방력기준”과 소방수요·소방활동 추이를 반영해서, 소방정원이 부족하여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열악해지는 일이 없도록 인력보강 계획을 별도로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음.

3) 당초 소방본부는 현장 부족인력 154명의 증원을 요청하였으나, 110명만 개정안에 반영되었음.

4) 현재 서울시 소방서 24개소 중 법정 기준인력 충족 소방서는 1개소(강남)에 불과함.

- 한편, 올해 9월 금천소방서 개소에 맞춰 정원 177명 중 98명은 구로 소방서에서 재배치하고 부족한 정원 79명을 순증하게 되었으며, 금천 소방서 본서 62명, 금천직할안전센터 63명, 시흥안전센터 31명, 금천구조대 21명으로 배치될 예정임.
- “소방력기준”에 따르면, 금천소방서의 법정 기준인력은 201명이나, 177명을 정원으로 개소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소방인력 보강을 통해 법정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임.

라. 의회사무처 정원 증원(증원 5명)

- 개정안은 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 준비, 청사 방호의 유지 및 관리, 의정 홍보를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 민원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5명을 의회사무처에 증원하고 있음.
 - 증원 내역은 행정6급 1명(인사권 독립 준비), 방호7급 1명(청사 관리 및 유지), 임기7급 1명(민원관리 강화), 속기8급 1명(속기수요 증가), 임기 8급 1명(의정 홍보)임.
- 당초 의회사무처는 16명의 증원을 요구하였으나, 요청 인력의 기 반영, 추가증원 요인의 미비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일부만 반영 되었음.⁵⁾

5) “인사팀 신설을 위한 5명 증원”은 「지방자치법」의 시행시기(2022.1.13)까지 유예기간

< 의회사무처 증원 요청과 반영 결과 >

부서명	직무 내용	요청	요청 직급	개정안 반영
총 계		16		5
의정담당관	인사팀 신설 및 독립적 인사제도 운영기반 마련	5	행정 5급 1, 행정 6급 1, 행정 7급 2, 전산 6급 1	행정 6급 1
	의원 교육연수 프로그램	1	임기제 6급 1	
	건축분야 시설개선 추진	1	건축 6급 1	
	청사보안 강화	2	방호 7급 2	방호 7급 1
언론홍보실	대변인 운영지원	1	임기제 7급 1	
	영상홍보 전담인력(아나운서)	1	임기제 8급 1	임기제 8급 1
의사담당관	비대면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운영 및 보안 강화	1	방송통신 6급 1	
	속기 지원 확충	1	속기 8급 1	속기 8급 1
시민권익담당관	민원 관리 강화 및 현장소통·방문 강화	2	행정 6급 1, 임기제 7급 1	임기제 7급 1
운영전문위원실	정책협력사업 발굴·강화	1	임기제 5급 1	

- 정원의 적정성 판단은 해당 부서의 특성과 업무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특히 관련 법령의 제·개정사항 등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법·제도의 시행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됨.
- 그런데,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기구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이 있고, 타 인사조직에 비교하면 관리 규모가 작다는 사유로 행정6급 1명만 반영되었음. 또한, “의원 교육연수 프로그램 1명”은 전담인력(행정 6급)의 확보로 “건축분야 시설 개선 1명”, “대변인 운영지원 1명” 등은 종전에 증원이 있었다는 이유로, “비대면 영상회의시스템 1명”은 추가증원 요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반영 되었음. 아울러, “정책협력사업 발굴·강화 1명”은 종전 관련인력을 증원한 바가 있고(‘18.10·‘20.5), 육 아휴직 등에 따른 결원이 있으므로 향후 인력 총원이 가능해 미반영 되었음.

- 이에 의회사무처는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집행부서로부터 독립되어 독자적인 법·제도의 틀을 마련해야 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등의 긴급한 추가 증원의 필요성이 있음.
- 지방의회 부활 30년만에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전문성이 대폭 확대된 법·제도의 개정 취지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인력이 조속히 확보되어야 할 것임.

마. 보건환경연구원 정원 증원(증원 1명)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2019.10.17)에 따라 2021년부터 생태독성 수질기준 적용 시설이 대폭 확대되고(4개소→114개소), 분석 관련 업무량이 대폭 증가(약 7~8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담인력인 환경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있음.
- 생태독성검사는 유해화학물질 독성을 생물체인 물벼룩을 이용해 검사하는 것으로, 물벼룩에 대한 연중 관리가 필요하고, 검사 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임.
- 당초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연구사 2명의 순증을 요청하였으나, 담당 부서인 물환경생태팀(팀장 외 11명)은 계절에 따라 업무량의 변동이 많아 물벼룩 배양업무를 분담할 수 있어 1명 증원으로 조정되었음.

바. 아리수정수센터 정원조정(시설관리8급 △8→공업연구사 +8)

- 2020년 인천시 유충 검출 등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의 관리가 강화되고 수돗물 수질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아리수정수센터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연중 24시간 고도정수처리 운영과 정밀수질분석 등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전문인력의 배치가 필요함.
- 이에 따라 아리수정수센터는 당초 공업연구사 8명 순증을 요청하였으나, 시설관리직류의 장기결원을 활용해 별도 증원없이 공업연구사 8명과 상계하게 되었음.

<정수센터별 시설관리직류 장기결원 상계조정 결과>

구분		계	광암	구의	죽도	영등포	암사	강북
공정관리지점 수 (응집지, 모래여과지 등)		458	36	46	48	64	160	104
인력	기존	12	2	2	2	2	2	2
	증원	8	-	1	1	1	3	2
	계	20	2	3	3	3	5	4

사. 종합의견

- 개정안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 인력 확보, 금천소방서 신설과 소방분야 법정기준 미달에 따른 인력 확충, 의정활동 및 생태독성 검사 인력 보강 등을 위해 필요정원을 증원하고 아리수정수센터의 결원정원을 조정하고 있음.

-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 신설에 따른 증원은 향후 치안행정 수요의 규모와 지속 여부를 고려해 서울시경찰청 파견 인력의 확대, 추가적인 조직의 확대와 정원의 증원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소방인력의 증원은 소방인프라 기반 확충과 재난 골든아워(golden hour) 확보를 위해 2022년까지 단계별로 법정기준보다 부족한 인력(총 520명)을 충원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의회사무처에 대한 증원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인사제도 등의 대변화가 예정되어 있고, 시의회의 의정 역량 강화와 비상사태시에도 차질없는 시의회 운영을 위해 증원이 시급한 측면이 있음.
- 한편, 2021년 인력운영비 예산편성액은 1조 8,490억원으로 기준 인건비 1조 8,798억원 대비 308억원의 여유가 있으며, 이번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계액 200억원을 포함하면 기준인건비 대비 108억원의 여유가 예상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34
----------	------

제출년월일 : 2021년 4월 2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자치경찰제의 시행,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소방공무원 시·도별 기준정원이 증원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위원회 사무기구 정원 증원(36명) 및 재배치(7명)

1) (증 원) 정무직 2, 행정4급 2, 행정5급 5, 행정6급 8, 전산6급 1, 행정7급 13, 행정8급 2, 총경 1, 경정 1, 경위 1

2) (재배치) 행정5급 2, 행정6급 3, 행정7급 2

나. 경찰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규정함 (안 별표 6)

다.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소방 분야별 법정 기준인력 보장을 위한 소방공무원 증원(193명) (안 별표 5)

- 소방정 1, 소방령 4, 소방경 12, 소방위 79, 소방장 44, 소방교 53

라.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생태독성 검사 등 행정수요 증가 분야의 효율적 인력 배치를 위한 증원(6명)

마. 아리수 수질향상·생산공정 효율화를 위한 아리수정수센터 정원 조정

- 시설관리8급 △8 → 공업연구사 +8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12조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7조
- 4)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1. 3. 5.~3. 9.)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8,709명”을 “18,94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2호부터 제6호”로, “10,410명”을 “10,404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7,196명”을 “7,38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345명”을 “35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238명”을 “278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 3명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방공무원”을 각각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를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서울특별시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2 및 별표 4의 제목 중 “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4의 표 중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 계	11,552					
-----	--------	--	--	--	--	--

같은 표의 정무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부시장란 다음에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란,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무직 계	4					
-------	---	--	--	--	--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					1
-------------------------	---	--	--	--	--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1					1
--------------------------	---	--	--	--	--	---

같은 표의 일반직 계란, 4급란, 5급 이하 소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564					
-------	--------	--	--	--	--	--

4급	249	147	17	8	66	11
----	-----	-----	----	---	----	----

5급 이하 소계	10,141					
----------	--------	--	--	--	--	--

같은 표의 연구직 계란, 연구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직 계	403					
-------	-----	--	--	--	--	--

연구사	341					
-----	-----	--	--	--	--	--

별표 5의 표 중 소방공무원 계란, 소방정란, 소방령 이하 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공무원 계	7,389					
---------	-------	--	--	--	--	--

소방정	30	2		28		
-----	----	---	--	----	--	--

소방령 이하 계	7,353					
----------	-------	--	--	--	--	--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울특별시에는 두는 경찰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제3항 관련)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사 무 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경찰공무원 계	3					
총경	1					1
경정	1					1
경위	1					1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u>18,709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u>제2호 및 제3호</u>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u>10,410명</u></p> <p>2. 본청·소방학교·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u>7,196명</u></p> <p>3. (생략)</p> <p>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u>345명</u></p> <p>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u>238명</u></p> <p><u><신설></u></p> <p>제3조(정원채정기준) ① <u>소방공무원</u>을 제외한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② <u>소방공무원</u>을 제외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③ (생략)</p> <p>제4조(직급별 정원) ① <u>소방공무원</u>을 제외한 공무원의 정원의</p>	<p>제2조(정원의 총수) ----- ----- ----- <u>18,944명</u>----- -----.</p> <p>1. -----<u>제2호부터 제6호</u>----- ----- <u>10,404명</u>-----</p> <p>2. ----- ----- <u>7,389명</u>-----</p> <p>3. (현행과 같음)</p> <p>4. ----- <u>350명</u>-----</p> <p>5. ----- <u>278명</u>-----</p> <p>6. <u>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 3명</u></p> <p>제3조(정원채정기준) ① <u>소방공무원</u>과 <u>경찰공무원</u>----- -----.</p> <p>② <u>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직급별 정원) ① <u>소방공무원</u>과 <u>경찰공무원</u>을 제외한 공무</p>

현		행				
<p>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본청과 사업소 간에 1급 일반직 임명에 따른 3급이상 일반직 정원은 관리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신설></p> <p>③ (생략)</p> <p>[별표 2]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p> <p>[별표 4]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p>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총계	11,513					
정무직계	2					
시장	1	1				
부시장	1	1				
<신설>						
<신설>						
일반직계	10,536					
1급	7	6	1			
2·3급	24	18		1	3	2
3급	19	10		1	8	
3·4급	5	5				
4급	247	147	17	8	66	9
4·5급	10	10				
5급 이하 소계	10,115					
전문경력관 소계	109					
별정직계	37					
4급상당	5	3	2			
5급상당 이하 소계	32					
연구직계	394					
연구관	62	4		34	24	
연구사	332					

개		정					안
<p>원 -----</p> <p>-----.</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서울특별시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별표 2]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p> <p>[별표 4]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p>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총계	11,552						
정무직계	4						
시장	1	1					
부시장	1	1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					1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1					1	
일반직계	10,564						
1급	7	6	1				
2·3급	24	18		1	3	2	
3급	19	10		1	8		
3·4급	5	5					
4급	249	147	17	8	66	11	
4·5급	10	10					
5급 이하 소계	10,141						
전문경력관 소계	109						
별정직계	37						
4급상당	5	3	2				
5급상당 이하 소계	32						
연구직계	403						
연구관	62	4		34	24		
연구사	341						

현 행

구 분	계	분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지도직 계	24			2		
지도관	2					
지도사	22					
교육공무원 계	520					
총 장	1			1		
교수 등	450			450		
조 교	69					

[별표 5] 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
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2
항 관련)

구 분	계	분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소방공무원 계	7,196					
소방준감	5	4		1		
소방정	29	2		27		
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	1			1		
소방령 이하 계	7,161					

<신 설>

개 정 안

구 분	계	분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지도직 계	24			2		
지도관	2					
지도사	22					
교육공무원 계	520					
총 장	1			1		
교수 등	450			450		
조 교	69					

[별표 5] 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
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2
항 관련)

구 분	계	분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소방공무원 계	7,389					
소방준감	5	4		1		
소방정	30	2		28		
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	1			1		
소방령 이하 계	7,353					

[별표 6] 서울특별시에 두는 경찰공무원
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3
항 관련)

구 분	계	분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경찰공무원 계	3					
총경	1					1
경정	1					1
경위	1					1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을 18,709명에서 18,944명으로 총 235명 증원함에 있어 관련 인건비 발생
(정무직 +2, 서기관 +2, 5급 +5, 6급 +10, 7급 +15, 8급 +4, 연구사 +1, 소방정 +1, 소방령 +4, 소방경 +12, 소방위 +79, 소방장 +44, 소방교 +53, 총경 +1, 경정 +1, 경위 +1)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1년 서울특별시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향후 5년간의 소요인건비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세입						
	소계(a)						
구분	세출						
	인건비	8,952,178	18,316,156	18,737,428	19,168,389	19,609,262	84,783,413
	소계(b)	8,952,178	18,316,156	18,737,428	19,168,389	19,609,262	84,783,413
☐ 총 비용(a-b)		8,952,178	18,316,156	18,737,428	19,168,389	19,609,262	84,783,413

※ 매년 인건비 상승률 2.3%('21년 기준) 적용 추계

※ 1차년도는 정원 배정시기 고려 6개월분으로 비용추계[정원배정 시기 : '21.7.1.(예정)]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국비	146,768	300,287	307,194	314,259	321,487	1,389,995
	지방세수입	8,805,410	18,015,869	18,430,234	18,854,130	19,287,775	83,393,418
구분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8,952,178	18,316,156	18,737,428	19,168,389	19,609,262	84,783,413

※ 국비는 경찰직 인건비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김철묵(02-2133-673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정원 변동내역 : +235명

○ 일반직공무원 : +39명

- 정무직 +2, 서기관 +2, 5급 +5, 6급 +10, 7급 +15, 8급 +4, 연구사 +1

○ 소방직공무원 : +193명

- 소방정 +1, 소방령 +4, 소방경 +12, 소방위 +79, 소방장 +44, 소방교 +53

○ 경찰직공무원 : +3명

- 총경 +1, 경정 +1, 경위 +1

2. 비용소요 추계 : 17,904,356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소요비용	세부내역	비고
합계	+17,904,356	◆ 총계 : +17,904,356	'21년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
		○ 일반직(+39명) : +2,835,296	
		▷ 정무직(1급상당) : 115,359 × 1명 = 115,359	
		▷ 정무직(2급상당) : 106,359 × 1명 = 106,359	
		▷ 서기관(+2) : 102,597 × 2명 = 205,194	
		▷ 5급(+5) : 94,000 × 5명 = 470,000	
		▷ 6급(+10) : 74,111 × 10명 = 741,110	
		▷ 7급(+15) : 63,155 × 15명 = 947,325	
		▷ 8급(+4) : 46,181 × 4명 = 184,724	
		▷ 연구사(+1) : 65,225 × 1명 = 65,225	
○ 소방직(+193명) : +14,775,524			
▷ 소방정(+1) : 105,113 × 1명 = 105,113			
▷ 소방령(+4) : 103,071 × 4명 = 412,284			
▷ 소방경(+12) : 92,495 × 12명 = 1,109,940			
▷ 소방위(+79) : 85,352 × 79명 = 6,742,808			
▷ 소방장(+44) : 73,922 × 44명 = 3,252,568			
▷ 소방교(+53) : 59,487 × 53명 = 3,152,811			
○ 경찰직(+3명) : +293,536			
▷ 총경(+1) : 105,113 × 1명 = 105,113			
▷ 경정(+1) : 103,071 × 1명 = 103,071			
▷ 경위(+1) : 85,352 × 1명 = 85,352			

※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1년 기준으로 추계한 것임